

<Ⅲ>

第34條(實施의 推薦) ①정부 각기관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타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.
 ②제1항의 추천을 받은 기관은 그 제안의 실시여부를 추천기관 및 총무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第35條(實施評價) ①장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총무처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②장안실시의 주무부장은 각 실시기관의 실시평가를 종합하여 총무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③총무처장관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한다.

第8章 補 償

第36條(賞與金支給) ①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위한 제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 이로 인하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그해 또는 다음해의 해당회계의 예산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.
 ② 제1항의 상여금은 1년간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1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다. 다만, 절약된 경비의 금액이 연 5만원 이하인 경우의 상여금은 5만원으로 한다.
 ③ 제1항의 상여금은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 특히 성과가 뛰어난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장안 실시기관의 장의 추천 및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0만원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第37條(賞與金支給機關) ①제36조의 상여금은 당해 장안을 실시한 기관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급한다.
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관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지급기관을 지정하고 관계기관의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.
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지정된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 기관의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.

第38條(退職 또는 死亡後의 賞與金) 제안이 채택된 후

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.

第9章 附 則

第39條(秘密維持)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

第40條(委任事項)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

附 則(1973. 7. 2 대통령령제 6750호)

- ①(施行日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經過措置) 이 영 시행당시 실시평가 중에 있는 장안은 이 영에 의한 장안으로 보고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(廢止法令) 제안심사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附 則(1976. 7. 29대통령령제 8179호)

- ①(施行日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賞與金支給에 관한 經過措置) 이 영 시행당시 실시 중이거나 실시 예정인 장안에 대하여도 이 영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여금을 지급한다.

提案規程施行規則

(1974. 12. 17. 總理令 第140號 公布)

第1條(目的) 이 영은 제안의 모집·심사·실시·평가·상여금지급 등 제안규정(이하 "규정"이라 한다)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第2條(提案의 募集에 관한 公告 등) ①총무처장관은 매년 1월중 제안의 종류, 당해 연도에 심사할 제안의 모집기간 및 심사기간과 특전부여 기타 제안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여 응모에 편의를 부여하여야 한다.

②제안은 연중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다. 다만, 제1항의 모집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제안은 익년도에 심사 처리한다.

<계 속>